

신 택 계 약 서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적립보험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알리안츠생명보험(주)

(주)한국씨티은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알리안츠생명보험(주)**와 신탁업자인 **(주)한국씨티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변액보험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 “수익자”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변액보험특별계정에 편입되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변액보험의 계약자를 말한다.
3. “변액보험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보험계약의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설정한 계정을 말한다.
4. “투자일임업자”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위탁을 받아 투자신탁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영업일”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일을 말한다. 단, 토요일은 제외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적립보험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으로 한다.

제4조 (투자신탁재산 운용의 위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운용과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2.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투자일임으로 운용하는 방법
3.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방법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을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 그 내용과 범위를 신탁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위탁을 받은 투자일임업자는 위임된 업무에 한하여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일임업자와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5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③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6조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7조 (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8조 (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최초의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로 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2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9조 (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

본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제10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이하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이하 “어음”이라 한다)
3.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가지수선물, 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 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파생상품으로서 금리스왑거래 등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 (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4. 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외 파생상품
5.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 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6. 환매조건부매매
7.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8. 증권의 차입
9.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제12조 (투자대상자산 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내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주식형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2.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해당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3.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위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2. 투자신탁 해지 또는 폐지일 이전 1개월간
3.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4.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13조 (운용 및 투자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증권을 매수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

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10.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11.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

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투자신탁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14조 (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 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증권의 인수·인도와 대금의 지급·수령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 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8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2.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5.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및 회계

제17조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라 투자 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 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18조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고) ①기준가격은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납입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좌는 1원으로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해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투자신탁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년도 매 12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년도 중 처음 도래하는 회계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며, 투자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부터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20조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②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의 종료일 또는 결산기에 집합투자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장부 등 관계자료를 작성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시에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5장 투자신탁의 보수 등

제22조 (투자신탁의 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 신탁 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
2. 투자일임업자가 취득하는 투자일임업자 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 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1개월간으로 하며(단, 투자신탁 최초 설정 후 첫번째 보수계산기간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월말일까지로 한다),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을 적용한다.

1.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연 1000분의 [4.3]
2. 투자일임업자 보수율 : 연 1000분의 [0.1]
3. 신탁업자 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4.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매일의 수수료 = 투자신탁의 당일 순자산가치 X 보수율 X 1/365(원미만 절사)
2. 직전 수수료 정산일로부터 다음 수수료 정산일까지의 매일의 수수료 누계를 계산한다.

제23조 (기타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5.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6.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6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24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25조 (신탁업자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 제4항, 법 제24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는 관련 법령과 규정 등 및 각사간 업무위탁 기본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폐지 또는 법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의 뜻과 해지사유, 해지일자, 해지금 등의 지급방법 등을 사전에 신탁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 지급시 현금화되지 않은 자산이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이 완료된 후에 집합투자업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투자신탁재산의 현금화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어려운 경우로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 자체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해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자의 이익과 상충할 우려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탁업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 등의 방법으로 해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 (투자신탁의 폐지)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투자신탁을 폐지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투자신탁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우

-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투자신탁을 폐지할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폐지 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수익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수익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28조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 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9조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③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

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④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 (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16년 1월 4일

집합투자업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회 사 명 : 알리안츠생명보험(주)

대표이사 : 이 명 재 (인)

신탁업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다동)

회 사 명 : (주)한국씨티은행

은 행 장 : 박 진 회 (인)